

경북도청 신도시 IPARK 입주자모집공고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은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4. 3. 20입니다. (무주택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급회 공급되는 분양주택은 「주택법」 제3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적용 주택입니다.
- 해당지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에 따라 20이상의 시·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북 안동시, 예천군 모두를 동일 주택건설지역으로 보며, 이 지역은 「주택법」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입니다.
- 해당지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에 의거 지역제한 없이 신청가능하나, 동일 순위내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3항에 의거 해당 주택건설지역(안동시, 예천군)에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해당지구는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자원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4에 규정된 도청이전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게 우선공급하며, 신청접수 미달물량을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금융결제원(www.apl2you.com)에 배정물량을 게시 후 접수하므로, 반드시 확정된 물량을 확인하시어 청약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인터넷, 은행창구 등)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가산점수, 신청순위, 당해지역여부, 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당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당첨시 계약불가, 통장효력상실, 당첨자명단관리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어 청약자격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당사 및 청약접수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자격(제1·3순위)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특별공급 당첨자는 향후 특별공급이 제한되고(특별공급은 1회에 한정됨) 재소위 당첨자(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이 불가한 자 포함)는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급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제3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제41조의2 및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 2 규정에 의거 85㎡이하의 경우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체결이 가능한 날(2014. 4. 8)부터 1년 동안 전매가 금지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의거 당첨일로부터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3년,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1년간 다른주택(임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포함, 민영주택을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경우에만 해당)에 대한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단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 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기존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의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 통장은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차후 소유권이전 시 등기부등본상에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이 부가됩니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당첨자 중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시 최자중의 주택배정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고발되어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일정(당첨자 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모두를 무효처리합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예천군청 종합민원과 - 12123호 (2014. 3. 20 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산할리 경북도청이전신도시 B4-1BL
- **대지면적** : 34,260㎡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1층, 지상 15층, 9개동 총 48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중 489세대 중 특별공급 390세대 포함(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342세대, 다자녀 특별공급 24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24세대)

■ 공급면적 및 공급금액

1) 공급면적 및 세대수

(면적단위 : ㎡)

구분	주택관리번호 및 아파트 코드 (모델번호)	주택형 (주거전용면적 기준)	세대별 계약면적						공급세대수				
			주거전용	주거공용	계 (공급면적)	기타공용 (주차장포함)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계	특별공급			일반공급
										도청이전	다자녀	신혼부부	
민영 주택	2014000200-01	84.9931	84.9931	25.5468	110.5399	28.7678	139.3077	69.3889	489	342	24	24	99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2009. 4. 1)에 따라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의하여 청약신청 바람.

(단위 : 원)

2)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주택형 (㎡)	층별 구분	세대수	공급가격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입주시)
			대지비	건축비	계	1차	2차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계약시	2014. 5. 8	2014. 6. 8	2014. 9. 10	2014. 12. 8	2015. 3. 9	2015. 6. 8	2015. 9. 8	
84,9931	1층	29	40,092,280	181,407,720	221,500,000	11,075,000	11,075,000	22,150,000	22,150,000	22,150,000	22,150,000	22,150,000	22,150,000	66,450,000
	2층	33	40,092,280	186,207,720	226,300,000	11,315,000	11,315,000	22,630,000	22,630,000	22,630,000	22,630,000	22,630,000	22,630,000	67,890,000
	기존층	427	40,092,280	191,407,720	231,500,000	11,575,000	11,575,000	23,150,000	23,150,000	23,150,000	23,150,000	23,150,000	23,150,000	69,450,000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3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항별로 차등을 두어 당사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 (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이 미포함 되었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발코니확장)비용이 미포함 되었으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이며, 발코니 확장 계약은 분양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함.
-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 옵션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 옵션은 분양계약자 선택사항임.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시기 바람.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관리사무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지하주차장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상기 세대당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기부채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상기 주거공용면적은 당사에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면적이며, 세대당 공급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상호정산하기로 함,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그린생활시설 (단지 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이상 분할하여 받기로 함.(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로 감리자의 건축공정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대지경계 및 대지면적은 준공시 확정측량 등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하며,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경우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함.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거 연면적과 비주거 연면적 비율에 의한 주거부 대지비율 면적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과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으로 인한 기부채납면적 추가 발생으로 대지면적이 감소될 수 있음.(단 감소면적이 계약면적의 2% 미만인 때에는 상호 정산하지 아니함.)
- 사업주체가 정래에 대한주택보증(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대한주택보증(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봄.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멸기간 이내에 소멸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본 주택의 서비스면적(발코니, 테라스 등)은 세대별로 차이가 있으며, 실 시공시 변경사항이 다소 발생할 수 있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임(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음)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음.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함.(계약금2차,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요일일 또는 국경일일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본 아파트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이며, 주택법 제41조의2 및 주택법시행령 제45조의2 법령에 의거 최초 주택공급 계약체결일 이후 1년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됨.(단, 향후 주택법 및 관련법령 개정 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본 주택의 종도급은 당사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으며, 대출에 따른 주택신용보증수수료 및 인지대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출에 관한 추가비용은 대출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함. (단, 당사는 당사의 알선조건에 충족하는 계약자에게만 대출을 알선하며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작적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미납 시 연체료 부과 또는 계약조건에 의거 계약해지 될 수 있음.)
- * 상기금액은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Ⅱ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특별공급

1. 특별공급 신청세대 공통사항
- 가. 신청 및 당첨자선정 일시·장소

특별공급	구분	일자	시간	장소
도청이전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4]	신청일시	2014. 3. 25 (화) 2014. 3. 26 (수)	09:00~17:30 09:00~15:00	한국주택협회 홈페이지 (www.housing.or.kr)
	당첨자 선정/공고	2014. 3. 26 (수)	17:00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7항]	신청일시	2014. 3. 26 (수)	10:00~15:00	당사 견본주택
	당첨자 선정/공고	2014. 3. 26 (수)	17:00	

※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 신청방법**
한국주택협회 홈페이지 접속(www.housing.or.kr) → 메인화면의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시스템(apt2.housing.or.kr)” 바로가기 → 특별공급 인터넷청약에서 “경북도청이전신도시 B4-1BL 아이파크” 아파트 선택 → 청약신청 선택 →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확인 → 신청자 공인인증 → 서약서 동의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 신청자 공인인증 → 청약신청완료

나.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m² / 세대)

구분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계
84,9931	342	24	24	390

- 다. 유의 사항
- 기타특별공급은 배점순,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은 추천으로 이루어지며, 동·호수 추천은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일에 동시 발표함.
 - 사업주체는 당첨자만을 선정하며, 동·호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함. [동·호 배정 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공고할 예정임]
 -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당첨자 선정 이후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무작위 추천함.
 - 과거 특별공급 당첨자는 신청 불가함. (단, 이전기관 종사자 등은 제외)
 - 특별 공급 당첨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불가하며, 특별공급 신청 미달시 잔여 물량을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함) 전원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2014. 3. 20)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함.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서약서를 기본으로 우선 입주자를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의 주택소유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특별공급 신청접수는 1세대 1건만 가능하며, 2건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 처리함.
 - 청약 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당첨이후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간주하며(1회 특별공급 간주함),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지될수 있음.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계약 체결 이후라도 주택소유자로 판명되거나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확인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임의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신청자가 미달된 잔여 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며,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2. 도청이전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4 : 342세대)

- 가. 신청 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4. 3. 20)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4에 의하여 해당 기관에서 확인한 자 <주택소유여부와 무관함. 단 해당주택건설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자는 신청 불가함>
- 1) 도청이전신도시에 건설되는 도청 및 공공기관에 근무하기 위하여 이주하는 종사자
 - 2) 도청이전신도시로 이전하거나 설립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 ①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 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③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3) 도청이전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의 종사자 중 도시철도 및 투자촉진 등을 위하여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 ※ 기타 범위는 경상북도 내부방침을 따르기로 함.

나. 당첨자 선정 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천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

구분		구비사항
본인신청시 (배우자포함)	공통	※ 경북도청이전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청약통장가입 요건 등 일부항목 적용 배제함. • 주민등록증 • 인감증명서 1통 (용도 : 주택공급 신청용) •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1통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1통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미혼·이혼·사별, 배우자분리세대, 단독세대 등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확인 불가한 경우) •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소취(가입)확인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t2you.com’에서 발급가능) 단, 특별공급 대상자 중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국가유공자, 장애인은 제외
	도청이전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 주민등록등본(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가 분리된 경우에만 해당] • 주택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 (별지 제1호서식) • 특별공급 신청서 및 서약서 (별첨 서식) ※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신청은 한국주택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자는 상기 구비서류를 계약 체결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됨.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동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기재) 1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당사 견본주택 비치)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 대리신청자의 도장

- ※ 상기 제증명서류 중 주민등록등·초본 및 인감증명서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14. 3. 20)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선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 청약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은 추첨에 의함.

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 : 24세대)

- 가. 공급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4. 3. 20)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 의하여 만 19세 미만인 직계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주인자로서
- 청약예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기준에 따라 85㎡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금액을 예치한 자.
 - 청약부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 1의2 기준에 따라 85㎡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금액을 예치한 자.
 - 자녀수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됨. (단, 임신 중에 있는 태아는 포함이 안 됨)

나.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다.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

배점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65			
미성년 자녀수 (1)	5	4자녀 이상	5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 자녀수 (2)	10	2명 이상	10	영유아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1명	5	
세대구성 (3)	5	3세대 이상	5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3세대는 직계 존·비속으로 구성
		한부모 가정	5	세대주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 (4)	20	세대주 나이가 만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무주택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세대주 나이가 만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시·도 거주기간 (5)	20	10년 이상	20	세대주가 당해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특별시·광역시 기준이며,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도로 봄.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1년 미만	5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 제3항을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라. 구비서류

구분	구비사항
본인신청시 (배우자포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4. 3. 20) 현재 무주택세대주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배점기준표 및 무주택서약서(견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기재) 1통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입양 입증서류(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만 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산정한 자에 한함) - 파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동안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3년 이상 주소변동내역 표시분)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1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은 외국인등록증]

- ※ 상기 제증명 서류 중 주민등록등·초본 및 인감증명서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4. 3. 20)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마. 유의사항
-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는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된 경우에는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당첨은 무효처리함.
 -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접수는 1세대 1건만 가능하며, 2건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 처리함.
 - 세대주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있는 기간에 의해 산정됨.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주민등록말소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말소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이를 세대주 인정기간으로 함.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을 변경 후 세대주 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으로 함.
 - ①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 ② 세대주가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
 - ③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 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4.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7항 : 24세대)

- 가. 공급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7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4. 3. 20) 현재 혼인신고일 기준(재혼 포함) 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로 확인)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일 기준,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 기준)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9조"에서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재혼한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임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만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 입양의 경우 입주 전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양자격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사업주체가 입증이 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입주가 가능함. 입주 전 파악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당청(공급계약체소 및 부적격 처리됨)[분양권 전매 요청 시 입양자격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양자격이 유지되고 있다고 사업주체가 판단하는 경우에만 분양권 전매요청을 접수함]
 - 임신 중인 부부가 당청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등과 관련된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사업주체가 출산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에 의해 유산·낙태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주가 가능하며, 불법 낙태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당청(공급계약체소 및 부적격 처리됨).
 - 임신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구분	2013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3인 이하	4인	5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4,557,724원	5,102,802원	5,357,446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5,469,268원	6,123,362원	6,428,935원

- 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를 말한다)이하여야 함.(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함)
 ※ 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통계를 통계청에서 발표하기 전에는 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함.
- 나)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 및 19세 이상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으로 하되, 주민등록표 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된 19세 이상의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도 세대원으로 간주
 ※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다)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본인)의 직계 존·비속 포함)을 포함하여 산정(가구당 월평균소득 산정 시 임신 중인 경우 태아는 태아 수 모두 산정)
- 라) 군복무 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 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재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마) 종교기관(교회, 사찰)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 신고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바) 건강(의료)보험증상상 직장가입자 소득산정
 ①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 소득을 산정(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 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②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직인날인)과 재직증명서(직인날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산정하되,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③ 전년도 전직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 급여금액을 '재직증명서'의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④ 직장 가입자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안되는 경우(보육교사, 학원강사 등)
 - 사업자의 직인이 날인되고 총 급여액 및 근무시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조서)를 징구
- 사) 건강(의료)보험증상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소득산정
 ①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받아 월평균소득 산정
 ②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 원본을 제출하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을 반드시 제출
 ③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받아 월평균소득 산정
 ④ 금년도에 개업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
 - 국민연금 정보자료 통지서(징수원부로 발급신청) 또는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구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제출받아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적용하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을 확인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⑤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수입발생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제출(세대주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당해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⑦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 근로자 등
 - 사업자의 직인이 날인되고 총 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받아 소득 및 재직기간을 확인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하되, 상기 서류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제출받아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적용
 ⑧ 휴직 등의 경우
 - 전년도 중 일부기간만 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소득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추정
 - 전년도 전체에 걸쳐 휴직 등을 하고 당해연도에 복직 등(정상적으로 근로에 종사하게 된 경우)을 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근로자원천징수부와 재직증명서를 징구하여 월평균소득을 추정
 - 월평균소득의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 본인의 재직증명서와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나. 당첨자 선정방법

1) 상기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신회부부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① 1순위 : 혼인가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② 2순위 : 혼인가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단, 재혼의 경우 전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가간 내에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충족함.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미성년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단, 임신 중인 경우에는 태아의 수를 모두 인정하고,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 중 신청자 또는 현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포함하여 산정

다. 구비서류(본인 및 배우자 신청 시)

종류	세부내역		
기본서류	• 신흥부부 특별공급 신청서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당해 시·도 거주기간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임) • 무주택 서약서(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배우자 외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 청약자의 인감도장,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양식 견본주택 비치),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상기 제 증명서류 중 주민등록증·초본 및 인감증명서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4. 3. 20)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회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에 따름.

■ 일반공급

1. 일반공급 신청세대 공통사항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4. 3. 20)현재 세대주 또는 만 19세 이상인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당 아파트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 1항 2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도 공급대상에 포함됨. (단, 당해 주택의 공급 신청자 중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10조 3항에 따라 해당주택건설예정지역인 경북 안동시, 예천군 거주자가 우선함)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 함.
- 당해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하며, 향후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의 선정에 제한을 받음.
- 본 주택에 청약관련통장으로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계좌 재사용이 불가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하는 경우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당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하여 과태료 등이 부과 될 수 있음.
-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에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전 확인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람.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 입주자 선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순위에 의함.
2007. 9. 1일부터 시행되는 청약가점제에 의하여 동일 순위 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일정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2. 순위별 신청자격 및 접수일

구분	순위	신청자격	접수일자	장소 및 시간	당첨자 발표
민영주택	1순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청약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신청시 모두 가점제로 접수하고 본인 및 세대원이 2주택 이상 소유시 주택소유수에 따라 감점적용	2014. 3. 27 (목)	- 접수장소(인터넷)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 www.apl2you.com - 인터넷 접수시간 : 08:00~ 17:30	- 일시 : 2014. 4. 3 (목)
	2순위	접수대상 없음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및 대구일보
	3순위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추첨제	2014. 3. 28 (금)	- 접수장소(인터넷) -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가입자 : 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인터넷뱅킹 가입자 : www.apl2you.com - 인터넷 접수시간 : 08:00~ 17:30	

-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원으로 기준으로 거래 중이라도 접수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매체 및 견본주택 등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 서면통지 및 전화문의 응답은 하지 않음.
- ※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뱅킹과 전자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함.
-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노약자, 장애인 등 창구 청약 가능시간 : 해당 청약신청일 09:00~16:00, 단, 1·2순위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만 가능하며 3순위 접수는 청약자의 거래은행 창구에서 가능]
- ※ 주택청약 참가은행 : 기업, 국민, 외환,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하나, 신한은행
- ※ 주택소유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 내용 중 '가점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3.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3 제4항)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기타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지역
전용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3 제4항과 관련, 별표 1의 2(청약예금의 예치금액)]에 의거 85㎡초과 102㎡이하의 주택을 청약 할 수 있는 지역별 예치금액을 예치한 자는 85㎡ 이하의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음.

4. 청약관련예금 변경(전환)시 경과기간 및 요건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 요건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일, 이미 신청가능 전용면적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2년 경과시마다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예치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요건
 -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단, 공고일 이후 변경한 경우 신청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
 - 큰 주택규모로 변경한 분 : 신청일 현재 3개월이 경과한 자는 변경 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단, 3개월 미만인 자는 변경 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5. 신청접수방법

- 특별공급(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은 해당 청약신청기간에 당사 견본주택에서 청약신청하여야 함.
- 1순위
 - 1순위 청약자 전원은 가점제로 청약접수 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
 - ※ 청약자는 입주자선정방법(가점제 / 추첨제) 선택이 불가하며, 청약통장 순위 등에 따라 접수
 - ※ 각 주택형별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를 가점제, 60%를 추첨제 신청자에게 공급함.
- 3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
- 공통 : 층별, 동별, 호별 구분없이 주택형별로 접수하되,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 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단, 3순위까지 청약접수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받지 않음)
- 청약접수 시 유의사항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청약신청시 인터넷청약 또는 은행창구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해 확인(검증)없이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시 입력한(또는 주택공급신청서상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음.
 - 청약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본인의 청약자격(거주기간, 거주개시일, 무주택세대주기간,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전에 정확하게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청약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청약접수 은행 및 당사는 책임지지 아니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계좌로서 재사용이 불가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입주자모집공고분 전체 주택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한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가. 인터넷 신청접수방법(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구분	국민은행 ((구)주택은행 포함) 청약통장 가입자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이용대상	- 1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한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순위가 발생한 자 - 3순위 : 청약통장 취급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한 자 중 뱅킹계좌에 3순위 청약신청금 이상 잔액을 유지하고 있는 자 (※단, 인터넷뱅킹 1일 및 1회 이체한도가 청약신청금 이상이어야 함)	
이용방법 및 절차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 → KB부동산 → 주택청약 → 인터넷청약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2you.com)에 접속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인터넷 청약 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은행(www.kbstar.com) 및 금융결제원(www.ap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청약 참가은행 : 기업, 국민, 외환,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하나, 신한은행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람.

나. 노약자·장애우 등 청구 청약 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사항
일반공급	본인신청시 (배우자포함) • 주택공급신청서(1순위 :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 비치, 3순위 : 청약통장 취급은행 비치) • 입주자저축 통장 (1순위자에 한함) • 예금인장 (1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 대리신청 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 제출 : 주민등록증·초본, 가족관계증명원 등(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청약신청금 100만원(제3순위 신청자에 한함)
	제3자 대리 신청시 • 본인 및 배우자 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용도 : 주택공급신청위임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에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양식은 청약신청 접수장소에 비치)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상기 제출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단, 주민등록상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전 본인의 청약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표 등, 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6. 3순위 청약신청 : 금융결제원(www.ap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 혹은 청약자의 거래은행 본·지점 청구 신청접수

구분	청약신청금	신청금 납부 방법
전 주택형	100만원	- 주택청약 참가은행에 계좌개설 후 3순위 청약금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람.(인터넷 청약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 - 방문청약 시 가능한 청약을 접수하는 해당지역 소재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10매)로 준비하시기 바람.

※ 주택청약 참가은행 : 기업, 국민, 외환,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하나, 신한은행

가. 3순위 청약신청금 환불방법

1)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 이후 (평일 : 09:00 ~ 16: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환불장소 : - 청약신청 시 청약자가 지정한 거래은행 계좌로 이체 신청하신 분은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 이후에 자동 이체됨.

- 환불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청약접수한 거래은행 본·지점

3) 청구 환불시 구비서류

- 본인·배우자 환불시 : 주택공급신청접수(영수)증, 주민등록증, 청약당시 사용인장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자가 환불 시에 한함)

- 제3자 대리 환불시 : 상기 구비서류 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청약신청금 환불 위임용) 1통(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서명인증서)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제3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위임장

4) 제3순위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접수한 거래은행 본·지점에서 환불받기 별도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

5) 3순위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가점제 및 주택소유 관련 유의사항

1.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 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시 배우자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 신고일을 확인)
		1년 미만(무주택자 한함)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 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17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총점		7년 이상 ~ 8년 미만	9			84점 만점 기준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감점점수 (다음의 "감점 산정기준"참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3항·제5항·제7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됨.

2. 무주택기간 적용 기준

구분	신청자격
무주택 적용기준	1)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자속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6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2)에 따른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자속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2)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7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이 경우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 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자속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자속 가입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동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자속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 4) 1)부터 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1) 부양가족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자속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으로 함. 다만, 입주자자속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봄. 2) 입주자자속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입주자자속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함(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자속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 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3) 입주자자속 가입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자속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 가족으로 봄.
입주자자속 가입기간	1)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자속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자속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함. 2) 입주자자속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 신청시 자동 부여함.

3. 세대원 주택소유에 따른 감점 적용 기준

구분	감점항목		감점점수
	기준	소유 주택수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소유하는 주택이 2호 또는 2세대 이상인 경우	2호 또는 2세대	-5
		3호 또는 3세대	-10
		：	：
②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제1항 제1호·제2호 또는 제12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따른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2호 또는 2세대	-10
		3호 또는 3세대	-15
		：	：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은 되나, 2주택 이상인 경우 상기 감점기준 적용함.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외 세대원이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 1순위로 신청하는 경우 유주택자이므로 무주택 기간 점수는 0점이나, 주택소유에 따른 감점이 적용됨.

※ 감점점수가 전체 가점점수보다 많은 경우 가점제외의 점수는 "0"점으로 산정됨.

■ 주택소유 관련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주택매매 등 처분 사실은 건물등기부 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상 처리일)기준임.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단, 정규계약종료일까지 소명과 관련된 신청서 제출자에 한 한다)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 제3항]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 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직계 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 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등기부 등본 : 등기접수일
 - (2) 건축물대장 등본 : 처리일
 -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인이 되어 있는 서류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①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② 85㎡ 이하의 단독주택
 - ③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4)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5)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주택 소유자는 제외
 -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7)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넓어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어 있거나, 주택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이를 멸실 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8)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형·저가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공사가격 7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60㎡ 초과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보유기간을 무주택인정기간으로 인정됨.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7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세대주 인정기간 산정에 관한 유의사항

- 세대주 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에 의하여 산정함.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기간이라도 다음의 각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세대주 인정기간을 산정함. 변경 전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을 변경 후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이를 변경된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으로 함.
 - ①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주민등록주소 등으로 세대주로 등재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
 - ②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해당시설 거주기간
-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이후의 기간에 한정한다)을 변경 후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이를 변경된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 기간으로 함. 다만, 결혼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각각의 세대주 인정기간을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한번만 계산함.
 - ①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② 세대주가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 ③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 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Ⅲ 당첨자 선정, 발표 및 계약일정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특별공급	• 이전기관 공무원 특별공급은 한국주택협회 전산망을 이용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결정함. • 기타 특별공급 당첨자는 당사 견본주택에서 청약신청자 입회하여 공개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 특별공급 동·호수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함께 일괄수행함에 따라 당사 견본주택에서 특별공급 당첨자의 동·호수 추첨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음.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특별공급 대상자는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부적격 세대는 일반 예비당첨자에게 관계법령에 의거 공급함.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에 주의바람.
일반공급	•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입주자저축 가입은행 구분 없이 1·2순위는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3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1순위 청약자는 모두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함.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를 추첨제로 공급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당첨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2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3순위까지 전체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정당 당첨자중 미계약 세대 또는 계약취소 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당첨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당첨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 (일정 등은 별도 통보) • 전항에 의거하여 최초로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분은 미계약 또는 부적격 당첨세대에 대한 입주자 재선정을 위하여 당사 견본주택으로 내방하시어 연락 가능한 연락처, 주소 등을 기입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미제출시 사업주체는 금융결제원에서 통보받은 주소 및 연락처로 통보하며, 연락처 미상 또는 연락불가 및 지연으로 발생하는 불이익과 모든 책임은 예비당첨자에게 있음) •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당첨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 시 별도 공고함.

■ 예비당첨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2일 이내에 당사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정당당첨자의 계약체결 기간 이후 발생한 미계약 세대 및 계약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며, 일정 등은 별도 통보함.
- 예비당첨자는 통보하는 동·호수 배정일 및 계약체결일 불참시 예비당첨자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제한 등이 적용됨.

■ 인터넷, ARS 당첨자 발표 이용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이므로, 당첨여부는 당첨자발표장소 및 당첨자발표신문을 통해 재확인하시기 바람.

구분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국민은행(구)주택은행포함)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이용방법 및 절차	인터넷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2you.com) 접속 ⇒ 당첨자실조회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 ⇒ KB부동산 ⇒ 주택청약 ⇒ 당첨확인
	전화/ARS	☎ 1369(서비스코드 : 5#)	☎ 1588-9999(서비스코드 : 9-1-3)
	이용기간	2014년 4월 3일 ~ 2014년 4월 12일 (10일간)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정당 당첨자) : 2014. 4. 8 (화) ~ 2014. 4. 10 (목) (시간:10:00~16:00)
 - ※ 일정 및 시간의 변동이 있을 시 당첨자를 대상으로 별도 공지함.
- 계약체결 장소 : 당사 견본주택
- 각 순위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산검색결과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여부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요청하였을 시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내단, 정규계약종료일까지 소명과 관련된 신청서 제출자에 한한다)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와 부적격자로 판명 시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되며, 정규계약종료일까지 소명과 관련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적격 소명 및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 계약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에게 적격여부 확인 후 우선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Ⅳ 계약체결 및 용자지원

■ 분양대금 납부절차 및 납부방법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우리은행	1005-202-449005	(주)하나자산신탁	

-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함. (단, 부적격으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경과 후 사업주체에 환불신청서를 제출시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음)
-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시행사 및 시공사는 이에 대한 책임이 없음.
- ※ 중도금·잔금은 공급계약서상에 기재된 분양금 납부일에 상기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 지정 계약기간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당첨 효력이 상실됨.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산검색결과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이후라도 부적격자로 판명시 소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계약이 일방적으로 취소됨.
-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일정기간(10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단, 통보 방법은 청약시 제공한 휴대전화 및 유선전화등으로 통보하며, 정당 당첨자 계약일까지 연락불가 및 소명과 관련된 신청서 미제출 등은 계약의 포기로 간주하고 예비당첨자 우선공급 또는 임의 분양함)
- ※ 정당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 계약세대 발생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의거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하며, 이후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및 16조에 따라서 사업주체가 정하는 임의의 공급 방식으로 분양함.

■ 계약시 구비사항

구분	구비사항
공통 (본인 계약 체결시)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 (단, 인터넷 청약신청 당첨자는 제출 생략)) • 계약금(무통장입금증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1장으로 준비하시기 바람.) • 계약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용도 : 아파트 계약용) 1통 또는 서명인증서(외국인에 한함) 1통 • 본인 확인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 (거주지역, 가정항목별 입력내용 확인서류 등)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증·초본 각 1통(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통 추가)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혼인관계증명서 1통(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 장애인 수첩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배우자의 주민등록증·초본 각 1통(배우자와 분리세대의 경우에 한함) – 배우자 직계존속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배우자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분에 한함) – 직계 존·부속의 주민등록초본 각통(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단 직계비속은 만 30세 이상자에 한함)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 및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 주택소유현황서약서 및 공급계약체결관련 각서(계약장소에 비치)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당첨자 중 해당자)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서류 - 건축물등기부 등본(등기접수일 기준)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처리일기준, 가족대장 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미과세증명원등) - 재당첨 금지 등의 사유로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당첨자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료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가점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서류 등)
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아파트 계약위임용) 1통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양식은 기본주택에 비치)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및 인장

※ 상기 제 증명 서류중 주민등록증·초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수록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시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거주지, 주민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인감증명서 발급 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계약 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 2005. 7. 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주민등록증·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 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신청자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계약체결 후이라도 다음 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고, 당첨된 입주자자족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 (1)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주택소유현황 등 청약가점항목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 (2) 가점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3)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함.
- 지정 계약기간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이 취소됨(각각 동일한 입주자자족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 간 동일주택 중복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되지 않음.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 당첨된 아파트는 취소되며, 입주자자족 재사용 불가 및 당첨자로 관리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취소 및 고발 조치함.
- 주민등록법령을 위반 및 입주자자족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입주자자족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 이미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할 뿐만 아니라 입주자자족 재사용 불가함.
- 주택건설지역(대규모광역시 및 경상북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민등록 위장 전입자가 본 아파트에 공급신청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관련법규에 의거 처벌 될 수 있음.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 또는 인근 건축물 및 방음벽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탐승위치 등)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행정 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및 동·호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 아파트 및 상가의 대지경계 및 대지면적은 준공시 확정측량 등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전산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하며,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경우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전산하기로 함.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거 연면적과 비주거 연면적 비율에 의한 주거부 대지비율 면적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과 도시 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으로 인한 기부채납면적 추가 발생으로 대지면적이 감소될 수 있음.(단 감소면적이 계약면적의 2% 미만인 때에는 상호 전산하지 아니함.)
- 본 주택은 경상북도 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지구에 속한 구역에 건축됨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준공시까지 대지 지분 소유권이전이 지연될 수 있음. 택지개발지구내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관계없이 전적으로 해당 지자체 및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입주시기 지연 등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자는 책임이 없음.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단, 정규계약종료일까지 소명과 관련된 신청서 제출자에 한함) 소명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
- 부적격 당첨자 중 당사가 정한 기간 이내에 고의성 없이 신청자격을 착오로 잘못 입력(기재하였음을 소명할 경우 당사에서 판단하여 금융결제원에 당첨자 제외 요청을 할 수 있으나, 향후 1년간 다른 주택에 청약이 제한됨. (단, 부적격자라하여도 소명 및 재 채정 결과 적격자로 계약 체결이 가능할 시에는 당첨자로 분류되어 당첨자 제외 요청으로 통장 재사용(부활) 대상이 되지 않음)
- 보양권 전매요청 시 당해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취급기관은 양도자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도자가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음.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를 무효 처리함.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분양계약을 체결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를 준용함.

■ 입주자 용자지원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건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용자가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신용문제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분양대금을 지정계좌로 현금 납부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등의 사유로 계약 해제(취소)를 주장할 수 없음. (이 경우 사업주체는 중도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 대출신청 시 발생하는 제반비용(인지대, 주택신용보증수수료 등)은 대출신청자 본인이 부담하여야함.
- 주택신용보증서의 발급가능 여부에 따라 대출알선조건이 변경될 수 있음.
- 당사는 용자기관과 협약 후 계약자에게 협약조건을 제시하고, 대출을 신청한 계약자에게만 대출을 알선하며, 계약자가 당사의 대출알선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경우 대출을 알선하지 않음.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제한)에 따라 대출조건 등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정부정책·금융기관·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당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시(중금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V 마이너스 옵션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구분	품목	마이너스 옵션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 품목
I	문	목재문(문틀, 문짝, 도어록 및 경첩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발코니내부 PL창호, 세대 현관방화문 및 도어록, 소방관련 방화문
II	바닥	바닥재(마루판, 현관타일바닥, 현관디딤판등 일체), 걸레받이, 발코니바닥타일 및 재료보리대	바닥난방 +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III	벽	벽지, 장식벽(벽지, 타일, 비닐쉬트 및 벽패널류 등), 가변형벽체,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 벽체도장, 신발장, 화장대(상판 및 거울포함), 드레스룸(도어 및 시스템선반포함), 반침장, 재료보리대(옥실포함)	콘크리트 벽체 바탕처리 또는 기타부위 석고보드 마감
IV	천장	천장지(벽지류), 반지름림(물딩), 우물천장, 인테리어마감, 발코니천장도장	천장을 위 석고보드 마감
V	욕실	천장, 타일(바닥, 벽),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수전 및 헤드, 수전 등), 샤워부스, 욕실악세서리 일체, 욕실장, 바닥배수구커버(트렌치 포함), 욕실환풍기, 욕실스피커폰	액체방수 및 구체 위 바탕처리, 설비배관, 전기배관/배선
VI	주방	주방가구 및 가구(상판 및 악세서리 포함), 벽타일, 설비수전류, 렌지후드, 가스쿡탑, 주방형정TV, 광파오븐	소방감사 관련 후드, 주방 배기덕트
VII	조명기구	부착/매립/거치형 조명등기구(간접조명포함), 욕실매입등	배선기구류(스위치 및 콘센트)

※ 주택법 제38조 제1항 제3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1.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 유의사항

- 마이너스옵션은 계약 시 선택가능하며, 선택 후 변경 및 취소가 불가하며, 상기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품목별, 부분별로 선택할 수 없음.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금액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 또는 사업주체가 시공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을 사업주체가 시공하지 않는 경우,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마이너스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청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세대내 서비스 제공품목은 시공되지 않음.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세대는 발코니 확장공사 신청이 불가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마이너스 옵션부분 공사 시 기 시공된 소방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됨.
- 마이너스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 부분 공사 시 기 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기타 공사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 등을 훼손한 경우와 그로 인한 타세대의 피해에 대한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기한은 소음,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법규정을 준수하여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의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해야 함.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시공한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반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옵션 계약자는 계약 시에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시공 및 설치관련 확인서를 작성해야 함.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 시행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에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함.

2. 마이너스옵션 금액

(단위 : 원)

주택형(㎡)	84.9931	비고
금액	22,931,000	

- 상기 마이너스옵션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 됨.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분양가는 공급금액 총액에서 마이너스옵션 산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임.

Ⅵ 추가 선택품목 계약

■ 추가 선택품목 계약 (발코니확장)

1. 발코니 확장공사비

(단위 : 원, VAT포함)

주택형(㎡)	84.9931	비고
발코니 확장공사비	10,470,000	

2. 발코니 확장 납부계좌 : 추후 별도 안내 예정

3.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사항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5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주택공급 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 및 발코니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며, 미확장 세대의 기본품목을 차감한 가격임.
- 발코니 확장은 실별·위치별로 선택될 수 없으며,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된 금액임.
- 상기 비용은 발코니 외부샷시 금액이 포함된 가격이며, 발코니 비확장의 경우 외부샷시가 설치되지 않음.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취득세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계약 및 변경계약 등이 불가함.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달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을 개별시공(관계법령에 의거 입주자 등의 동의필요)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발코니 확장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체결할 예정이며, 선택 후 변경 및 취소가 불가함(단, 계약기간 내 발코니 확장계약 불가 시, 일정한 추후 통보함)
- 동일 동 내의 인접세대의 발코니 확장 여부로 발코니 세대 경계벽에 단열재가 설치되어 견본주택과 다를 수 있음.
- 비확장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할 수 있고, 부분적으로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 바람에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사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시 세대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확장시 대피공간과 연결되는 실의 경우 방화문이 설치되며 단열성능으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Ⅶ 플러스 옵션

1. 가전제품 판매가격

(단위 : ㎡, 금액·원, VAT 포함)

품목	상품명	제조사	판매가	비고
빌트인냉장고	TBI냉장고(RS674CHQFSR)	삼성전자	4,940,000	패널포함
			4,720,000	
	TBI냉장고(RS647LHQFSR)	삼성전자	7,170,000	패널포함
			6,950,000	
	BIS냉장고(R-L731JCF)	LG전자	5,450,000	패널포함
			5,230,000	
김치냉장고	BIS냉장고(R-L691JYF)	LG전자	7,530,000	패널포함
			7,310,000	
김치냉장고	김치냉장고(R-D222NW)	LG전자	1,480,000	
식기세척기	식기세척기(DWA-7501B)	동양매직	550,000	
	식기세척기(D1260MB)	LG전자	650,000	

2. 시스템 에어컨

(단위 : ㎡, 금액·원, VAT 포함)

주택형	구분		판매가	제조사
84A	GRILL TYPE	전체(5)	9,020,000	LG전자
		기본(3)	5,540,000	
	MOVING TYPE (주방 GRILL TYPE)	전체(5)	9,610,000	
		기본(3)	5,840,000	
	MOVING TYPE	전체(5)	9,760,000	
		기본(3)	5,980,000	

3. 플러스 옵션 납부계좌 : 추후 별도 안내 예정

Ⅷ 기타

■ 입주예정일 : 2015년 12월 예정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할 예정임.(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 될 수 있음)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은 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입주자 사전방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6항 제14의2호]에 의한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근린생활시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지하주차장, 어린이놀이터, 도서관, 경비실 등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됨.

■ 감리자 및 감리금액

구분	회사명	감리금액(원)	비고
건축	(주)해밀씨엔건축사사무소	₩977,775,554원	VAT포함
전기	(주)한국전설엔지니어링	₩308,038,686원	
소방		₩50,000,000원	
통신	(주)진광건설엔지니어링	₩40,000,000원	

■ 기타 유의사항(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평형 환산법 = 형별면적(㎡) ×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인 내용과 청약자 기재사항을 반드시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본인이나 직접 확인하여야 함.
- 기 청약자격이 전산 등록된 분 중 주민등록사항 등 청약자격이 변동된 자는 신청일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전산수록 사항을 변경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사전에 변경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전순위 청약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2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 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경우에도 입주자저축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는 재확인 기간(소명기간 10일, 단, 정규계약종료일까지 소명과 관련된 신청서 제출자에 한함) 내에 증명 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며, 입주자저축 재사용이 불가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기간 만료 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
-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은 불가함.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인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함.
-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입주인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 본 주택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항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세대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익을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견본주택 내 주택법 제38조의3 제3항에 의하여 평면도와 시방서를 비치함.
-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의 책임이 있음.
- 시공 중 문화재 발굴이 필요한 유적출토 시 문화재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으로 인한 입주 지연 시 입주지연에 따른 이익을 제기할 수 없음.
- 시공 중 천재지변,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익을 제기 할 수 없음.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공지할 예정임.
- 아파트 및 상가의 대지경계 및 대지면적은 준공시 확정측량 등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하며,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경우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함.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거 연면적과 비주거 연면적 비율에 의한 주거부 대지비율 면적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과 도시 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으로 인한 기부채납면적 추가 발생으로 대지면적이 감소될 수 있음.(단 감소면적이 계약면적의 2% 미만인 때에는 상호 정산하지 아니함)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시행사 및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 될 수 있음.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전수관리금을 예치함.
- 외국인인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구입 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취득 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외국환 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함.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견본주택 및 홍보물, 마감재 관련 유의사항(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기본형 세대 선택시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할 수 있고, 견본주택과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마감재, 제품품목 등)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시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발코니 외부창호류, 세대내 목창호류, 가구류, 유리, 바닥재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별도계약품목, 선택옵션품목 및 전시품목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 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으로, 별도계약 품목(설치사항, 규격), 선택옵션 품목,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익을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시된 마감자재 및 제공제품은 자체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등의 다른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음.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사용품 등은 분양가 미포함임.
-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로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참조하기 바라며, 세대모형으로 설치되어 있는 일부 타입의 경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견본주택은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본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사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 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함.
- 홈페이지,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광역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식재 및 사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사전 분양홍보자료 및 각종 홍보물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향후 변경 또는 취소 될 수 있으나,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익을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카탈로그 등 홍보물에 표현된 평면은 입면재료, 창호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평면이며, 동일한 평면이라도 위치에 따라 입면재료 및 창호가 상이하니 계약 전 필히 해당 세대의 입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면재료에 따라 창호상세가 상이할 수 있음.
- 각종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내부구조 및 사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설계 관련 유의사항(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는 경우에 대한 이익을 제기할 수 없음)
- 대지 확장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시행인가 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물건의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단지배치, 단지내 도로 선형, 조정(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단지내 사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공급면적 등이 계약체결 이후 입주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일반 분양시에 제시된 조감도, 모형,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 시행변경인가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함.
- 경미한 설계변경의 범위 안에서 옥탑, 지붕, 난간, 입면, 단지사설물 등의 위치가 이동 되는 등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진행 할 수 있음)
- 단지명칭 및 동번호, 외부색채와 외부상세계획 등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색채심의 등을 포함)결과 및 법규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시 이익을 제기할 수 없음.
- 단지조경, 식재계획, 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 색채 등은 디자인 의도와 현장 여건, 각종 심의평가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하며, 입주 후 불법구조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람.
- 단지내 도로 등의 경사도 및 단지레벨은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대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으며, 배치도(CG, 모형 등)의 바닥 마감패턴, 칼라 등은 추후 디자인 의도 및 인허가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 및 다양한 두께로 인해 안목치수가 도면과 다를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세대의 입접 또는 상하부 세대가 비확장 시에는 단열재 추가 설치로 인하여 입접세대 발코니 부위의 벽체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는 필요 시 선풍통 및 드레인 등의 위치, 개소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시, 선풍통 배수관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일부 돌출되어 미관상 저해요소가 될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설치유무, 형태 및 사양은 동별, 층별로 차이가 있으며,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판상형 구조의 단지로서 단지 배치상 동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 ·충에 따라 조망,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침해 및 일조량 감소가 될 수 있음.
- 단지내 지하시설물 설치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채광창, D/A)이 노출될 수 있으며, 단지 배치상 기계, 전기실 및 주차장, 급·배수기 및 분리수거함, 재활용 창고, 방음벽 등의 위치에 따라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사용되는 마루자재는 스템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는 목재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시 변형, 비틀림 등 우려가 있음.
- 세대내부 가구 및 거울설치 부위의 비노출면(바닥, 벽, 천장 등)은 별도마감 없음.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계약자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에 의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하기 바람.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 및 채광용 폴리카보네이트 등은 본 시공시 디자인 및 재질이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세대의 경우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창막/계막 전에 도면 및 모형 등을 확인하기 바람, 현관 전면에 계단실 또는 채광창의 위치는 동·호수, 배치에 따라 각 세대별 차이가 있음.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및 이에 따른 사용자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내 바닥포장, 지상, 지하 동출입구, 단지조경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외부 창호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등은 풍동실험 및 안전성에 따라 본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창호 계획에 있어 주거 활용도 향상을 위하여 위치 및 크기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화장실 천장에는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일부 유니트에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도시가스공급자에 의해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가스정압실이 단지내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저층부 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세대온수분배기, 급수급탕분배기, 세대분전함, 세대통신헌 등이 세대 주방가구 싱크볼 하부, 신발장 하부 또는 배면에 설치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월패드 및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체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한.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일부 불박이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상층부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건물과 건물사이의 보행자 통로, 주차 도로 및 단지외부의 공개공지 등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도로 인접 및 주변부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동에 인접한 부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공원, 휴게소, 옥외시설물, 주차장진출입구 등의 이용에 따른 소음 및 차량불빛 등의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각종 저층세대는 근린생활시설과 부대복리시설에 의해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승강기, 각종 기계, 환기전열교환기, 공조, 전기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 및 세대환기는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반사에 의해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일부 세대는 옥외 보안등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옥외보안등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름.
- 경관조명, 측면 로고설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함.
- 본 아파트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치는 공동으로 사용함.
-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문고, 경로당 등 부대 복리시설은 기본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제외되며, 마감재 및 제공품목, 진출입 동선 계획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해야 함.
- 근린생활시설 및 단지내 지하주차장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면적변경 될 수 있음.
-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가전제품, 부동산중개 등)는 본 사업과 무관하므로 특히 계약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옥실/현관 등 단차부위는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옥실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으며, 침실 내부로의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으로 옥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걸림이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세대는 세대별 조건 및 필수설비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세대내 주방가구 하부에는 시공 선후관계상 주방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대피공간 및 비화장 발코니는 외기로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외부 창호 설치시 동절기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옥실문에는 습기로 인한 문짝의 습도 조절을 위하여 상하부 마구리면에 도장, 래핑등 마감이 없음.
- 옥실 벤틀일은 시공공법상 타일 뒷면이 100% 채움이 불가하여 가장자리 타일 뒷 부분에 공간이 생길 수 있음.
- 세대내 평면길이,출구너비,반자높이,벽체두께,바닥판두께는 건축법제20조별표5 건축물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의 범위내에서 시공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에는 준공시 강제 배기장치를 설치하나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부대시설용 실외기가 일부 세대 부근에 설치될 수 있음.
- 사업승인 당시 계획된 소음치가 주변 지역여건의 변화로 건물 완공 후 소음치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차량 증가로 인한 입주 후 소음에 대하여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본 사업지는 경상북도 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구역에 속한 구역으로 지구내 기반시설(도로, 보행자도로, 공원, 완충녹지 등)은 전적으로 해당 지자체 및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계획의 변경, 취소, 지연은 본 아파트의 시공사와 무관함.

■ 본 아파트는 대한주택보증(주)의 주택분양보증을 받은 주택입니다.

■ 대한주택보증(주)의 주택분양보증 내용

보증서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1292014-101-0001200호	₩79,969,96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1. 보증채무의 내용 : 보증회사는 주택법시행령 제106조 제1호 가목에 따라 주택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 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완료) 또는 환급이행(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책임을 부담합니다.
2.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택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상태를 말합니다.
 - 가. 주택무자에게 부도 · 파산 · 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택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 다.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라. 시공자의 부도 · 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3.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의 납부
 -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강요 압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택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 주택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획(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획을 변경 ·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획을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획에 납부한 입주금
 -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택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택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주택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탕선풐 품목(에사홀로트, 발코니샤시,마이너스웁센 부위,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 주택무자·공동사업업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택무자·공동사업업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 주택무자·공동사업업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 주택무자·공동사업업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6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제7조 및 4항 적용)

※의무사항 적용여부

구분	적용여부	구분	적용여부
고기밀 창호	적용	고효율조명기구	적용
고효율기자체	적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일괄소동스위치	적용	절수설비	적용

■ **분양가 내역공개**

- 주택법 3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동주택의 분양가 산정 등 에 관한 규칙 제 15조의 분양가 주요항목은 아래와 같음.
- 아파트 단지 분양총액 범위 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 검증은 실시하지 않음.
- 아파트 분양가격 항목별 공시내용은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은 가격으로서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 본 주택은 「주택법 제38조의 2」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함. (단위 : 원, 부가세포함)

항목	공종	금액
1. 택지비(3)	택지공급가격	17,407,314,314
	기간이자	370,540,438
	그 밖의 비용	1,827,270,168
2. 공사비(5)	토목	2,360,868,400
	건축	34,769,152,800
	기계설비	3,273,022,100
	그 밖의 공종	7,243,573,500
	그 밖의 공사비	6,009,483,200
3. 간접비(3)	설계비	616,400,000
	감리비	1,375,814,240
	부대비	31,543,953,313
4. 그 밖의 비용(1)		5,944,507,527
합계		112,741,900,000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상호	주소	등록번호
사업주체	경북에스엠씨디프로젝트금융투자(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4층	110111-5147586
	(주)에스엠씨디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4층	110111-4235324
	(주)서미트캠프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24, 비106호	110111-2479370
시공회사	현대산업개발(주)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110111-0279433

※ 경북에스엠씨디프로젝트금융투자(주), (주)에스엠씨디, (주)서미트캠프는 주택법 제10조에 의거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함.

■ **건본주택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옥동 1115번지 (☎ 054-855-0055)

■ **대구 상담사무소** :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13-91번지 현대빌딩 3층 (☎ 053-359-0033)